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4 발의연월일: 2020. 6. 30.

발 의 자:서동용・이동주・유정주

인재근 • 양정숙 • 안민석

서영교・야진(비)・이병훈

배진교 · 고영인 · 김회재

남인순 · 신정훈 · 주철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학·약학 계열 대학,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그러나 일부 대학 및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목적이라는 입법 취지가 지켜지 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, 특히 입학 장벽이 높은 사회·경제 적 취약 계층에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 아져 가고 있음

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·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 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 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달성 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).

법률 제 호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포함한다"를 "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포함한다"를 "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"로, "노력하여야"를 "하여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노력하여야"를 "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 하여야 한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
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4.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대학의 입학기회 확대) ①	제15조(대학의 입학기회 확대) ①
지방대학의 장은 「고등교육	
법」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	
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	
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	
른 고등학교를 말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) 또는 지방대학을	
졸업한 사람(졸업예정자를 <u>포</u>	
<u>함한다</u>)을 선발할 수 있다.	<u>포함한다.</u>
	<u>이하 이 조에서 같다</u>
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	2
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	
과대학, 한의과대학, 치과대학,	
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	
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	
를 졸업한 사람(졸업예정자를	
<u>포함한다</u>)의 수가 학생 모집	<u>포함한</u>
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	<u>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</u>
되도록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	
	<u>하</u>
	<u>여야</u>
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	③

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 학전문대학원, 의학전문대학원,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 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(졸 업예정자를 포함한다)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 율 이상이 되도록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

<신 설>

	-1 .1 .1
	ᅱ서사
	하여야
	, , ,
_	
_	
•	

-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한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

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
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<u>자</u>

	4.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